



해운과 세무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법무법인광장 선박금융팀
(전) 컨테이너선사 및 벌크선사 회계감사
(전) 신한캐피탈 선박금융구조화용역
KSF선박펀드감사, 세무 및 자문
캠코선박펀드 세무, 선박평가 및 자문
한국금융연수원 해운금융과정 강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비상근감사
저서 : 「선박금융의 회계와 세무」, 「법인세법」

다산회계법인
이연호 공인회계사
yhlee@dasancpa.com

DASAN 茶山會計法人

BBCHP 거래구조에서 용선사의 TAX FLOW

가정 : 선박취득가액 500억, 매년 운항수입 60억(운항이익 20억), 선박금융 400억 10년 분할상환 15년 후 매각가액 300억 (매각 당시 장부가액 200억)

단계	거래/소득	세목	과세표준	세율	세액
취득단계	선박의 취득	취득세(등록면허세)	취득가액 500억	2.02%	10.1억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10%	1.01억
		(매입)부가가치세	취득가액 500억	10%	50억
보유단계	선박보유	재산세	시가표준액 400억 + 잔존가치율	0.3 %	13.5억
	용선료의 지급	원천세(법인세)	용선료 지급액	2.20 %	9억
운항단계	선박의 운항 (대선)	법인세	운항이익 연간 20억	20 %	60억
		지방소득세	법인세	10 %	6억
		(매출)부가가치세	운항수입 연간 60억	10 %	90억
매각단계	선박의 처분(scrap)	법인세	처분이익 100억	20 %	20억
		지방소득세	법인세	10 %	2억
		매출(부가가치세)	처분가액 300억	10 %	30억
				합계	291.41억

용선사 TAX FLOW에 대한 조세특례 등

거래/소득	세목	세액	특 례
선박의 취득	→ 취득세(등록면허세)	→ 10.1억	→ 등록된 국제선박 : 100% 면제 (등록면허세 제외) 미등록 외항화물선박 및 연안항로취항선박 : 50% 감면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국제선박 : 100%면제 (등록면허세 제외)
	→ 취득세감면분 농어촌특별세	→ 1.01억	→ 100% 면제대상 : 비과세 50% 감면대상 : 과세
	→ (매입)부가가치세	→ 50억	→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 : 면세
선박보유	→ 재산세	→ 13.5억	→ 등록된 국제선박 : 5% 감면 미등록 외항화물선박 및 연안항로취항 선박(5년간) : 50% 감면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국제선박 : 100%면제
	→ 원천세(법인세)(*)	→ 10억	→ BBCHP, T/C, V/C :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배제 BBC : 선박임대소득(사용료소득)으로 2.2%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선박의 운항 (대선)	→ 법인세	→ 60억	→ 톤세대체
	→ 지방소득세	→ 6억	
	→ (매출)부가가치세	→ 90억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영세율 T/C, V/C 용선료수입(외항선박) : 영세율
선박의 처분 또는 Scrap	→ 법인세	→ 20억	→ 톤세대체
	→ 지방소득세	→ 2억	
	→ (매출)부가가치세	→ 30억	→ 수출 : 영세율
		292.51억	

(*)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타 : 미환류소득세, TAX LEASE, 지방교육세

톤세

□ 톤세의 과세체계

해운소득	비해운소득
간주이익 (선박표준이익)	실제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법인세

-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금융이자 과소여부에 불구하고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간주

※ 선박표준이익(간주이익) = $\sum(\text{외항선박의 순톤수} \times \text{톤당이익률} \times \text{운항일수})$

- 톤(순톤수)당이익률 : 1,000톤 이하 14원, 1,000톤-10,000톤 11원, 10,000톤-25,000톤 7원, 25,000톤 초과 4원
- 5년 단위로 계속 적용 및 적용포기를 선택

□ 해운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용대선 포함)
- 선박의 매각(톤세기간별로 안분)
– 건조중인 선박의 매각손익 제외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및 지급이자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외환차손익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파생상품손익
- 보험차손익(톤세기간별로 안분)
- 법정관리결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톤세/법인세 대비 (2019년 실적)

(단위 : 백만원)

	법인세	톤세+법인세	절감액
A해운	7,316	1,451	5,865
B해운	5,268	431	4,837
C해운	9,742	5,323	4,419
D해운	7,031	2,744	4,287
E해운	4,085	393	3,692
F해운	142,858	140,493	2,365
G해운	2,901	971	1,930
H해운	1,776	72	1,704
I해운	1,448	66	1,382
J해운	1,888	605	1,283

(단위 : 백만원)

	법인세	톤세+법인세	절감액
K해운	0	1,641	(1,641)
L해운	1,663	3,093	(1,430)
M해운	0	745	(745)
N해운	3,836	4,372	(536)
O해운	0	396	(396)
P해운	12	315	(303)
Q해운	0	178	(178)
R해운	55	190	(135)
S해운	9	112	(103)
T해운	0	70	(70)

리스

□ 국제회계기준서 개정 ⇒ 201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리스 범위 확대 – T/C, CVC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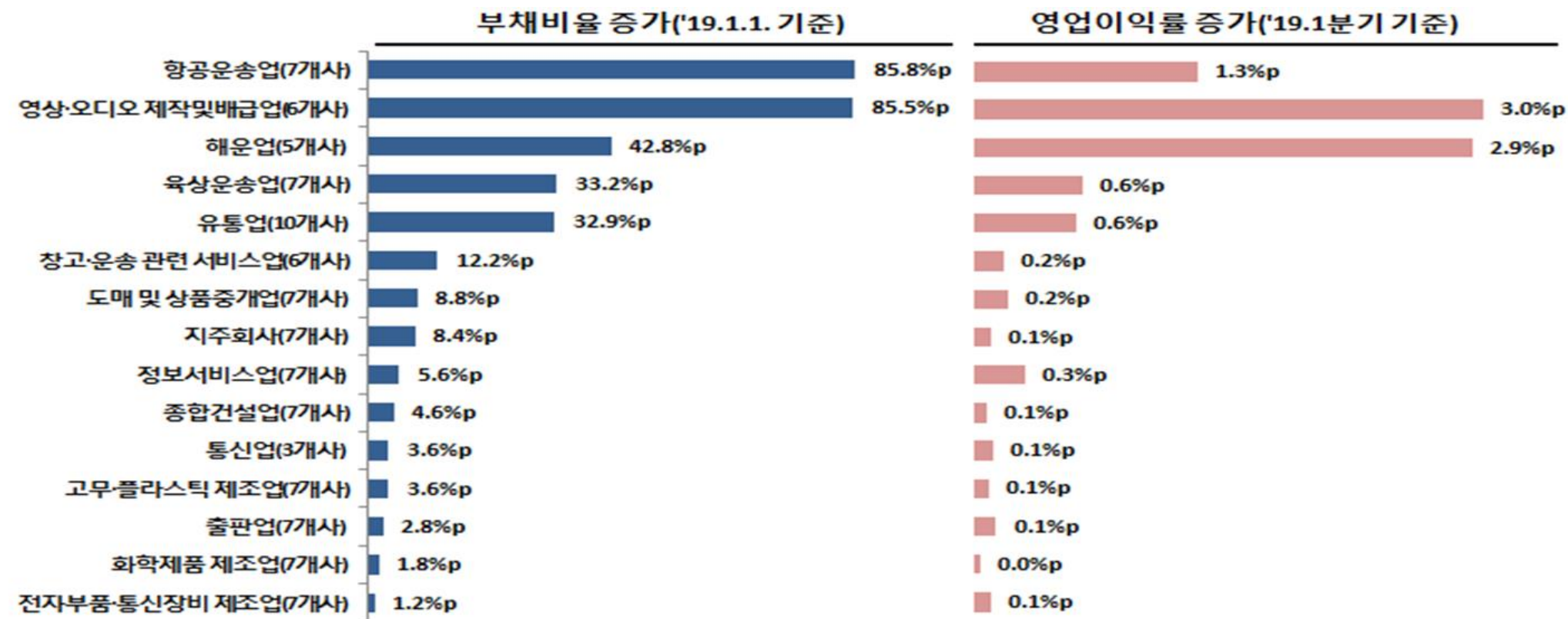
- 한국형 선주시업 포함

▶ 리스이용자 회계모형 변경

- 종전 기준서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는 위험과 보상모형
- 개정 기준서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을 제거한 사용권자산모형 (단일모형)

※ 리스제공자 : 종전 동일 – 금융/운용리스에 따른 이중모형

□ 업종별 리스기준서 개정 효과



- 2019년 1분기 기준 부채비율 HMM 235%, 대한해운 11% 상승

□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개정 - 리스이용자 회계모형 변경

	개정전	개정후
자산/부채의 인식	계상 없음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계상
수익/비용의 계상	리스료비용 계상	사용권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
		리스부채 : 이자비용 계상

□ 세무상 회계처리

▶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 법인세법상 리스료 수입/지출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 적용
-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사용권자산/리스부채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는 불인정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계산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자산의 투자에서 제외됨

▶ 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로 투자하는 자산은 배제

기능통화회계

■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함) 의 통화
국내 상장해운회사는 모두 기능통화회계를 적용 중

■ 재무제표 :

기능통화재무제표
-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로 기록
- 외화환산이익이 미계상

+

표시통화재무제표
-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
- 공시재무제표 및 주총승인재무제표

■ 법인세신고 :	원화기준방법	➡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기능통화기준방법	➡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표시통화기준방법	➡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감가상각비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한다) 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기능통화기준방법 및 표시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할 경우 외화환산손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할 수 있음

국제조세 – 용선료 과세방법

- 국제조세의 특징 : 소득원천별 과세,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 : 2019년 7월 현재 파나마 포함 93개 국가와 체결
조약미체결국가 중 라이베리아, 마셜아일랜드 등은 상호면세 적용(국제운수소득)
- 용선종류별 용선료 등에 대한 국세 과세방법

구분	BBCHP	BBC	T/C	V/C
국제운수소득 해당여부	NO	NO/YES(*1)	YES	YES
자국세법 및 조세조약 등에서 상호면세주의를 정하고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비과세	조약에 따라 국제운수소득, 사 용료소득 (대부분) 또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규 정의 따라 과세/비과세	비과세 (상호 면세) 또는 일부과세 (*2)	
상호면세주의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고정사업장 유무 등에따라 종합과세 또는 완납적 원천징수	

(*1)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에 포함 또는 제외하고 있음.(대다수는 제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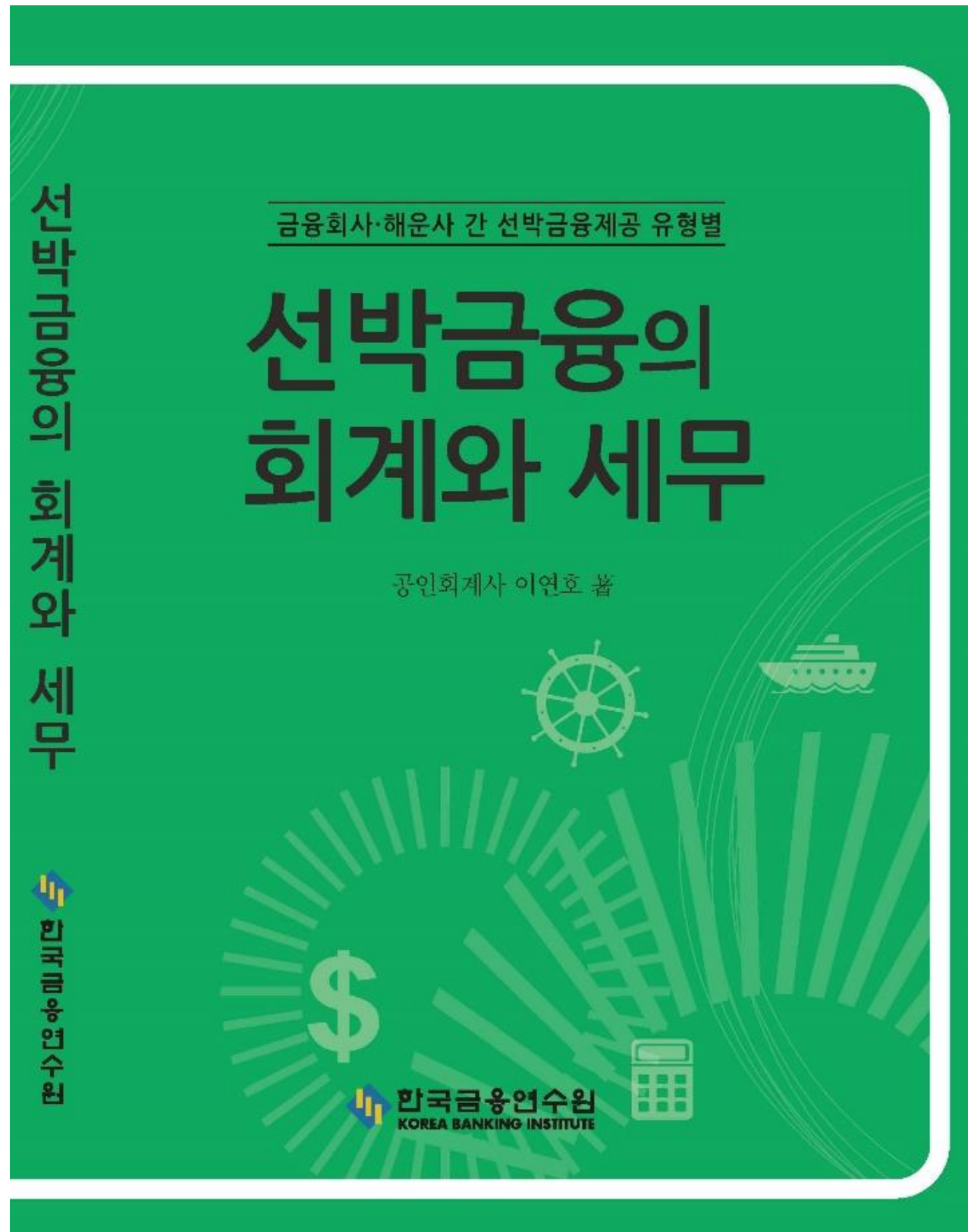
(*2)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원천지국에서 일부 과세권만을 제한하기도 함

국제조세 – 해외SPC 과세

□ 해외SPC에 대한 과세

구분	과세효과
법인격을 부인할 경우	용선사와 SPC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각종 신고, 납부, 조세협력의무 수행 - 국조법상 이전가격과세 미적용 SPC의 자산, 부채, 손익을 용선사와 합산하여 관련 세액 계산 및 신고, 납부 - 미이행시 법인세과소신고/납부 가산세 등 부과 SPC의 매출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세 신고 (영세율 등) - 미이행시 부가세과소신고/납부 가산세 등 부과
고정사업장으로 볼 경우	용선사 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SPC의 매출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세 신고 (영세율 등) - 미이행시 부가세 가산세 등 부과 고정사업장을 별개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 납부 - 미이행시 법인세과소신고/납부 가산세 등 부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은 원천지국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하여 국내에서 과세
내국법인으로 볼 경우	SPC를 별개의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제반 납세의무 수행 부가세 업무는 위고정사업장과 사실상 동일

「선박금융의 회계와 세무」



목 차

- 개론
- 선박금융 관련 법령
- BBCHP 회계와 세무
- BBC 회계와 세무
- 선박리스 회계와 세무
- Sales & Leaseback 회계와 실무
- 선박펀드 회계와 세무
- T/C & V/C 회계와 실무
- COA & CVC 회계와 실무
- 톤세
- 과점주주 취득세
- 선박금융기관 원천징수